

국토교통부훈령 제2023-호

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기 관 명 (부 서 명)	국토교통부 (운영지원과)
연 월 일	2022. 12. .

1. 개정이유

우리 부 특성에 맞는 유연한 인사운영과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개정된 인사운영 특례 규정의 적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것과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존에 적용 중인 인사운영 특례 사항인 경채직위군 선발, 근속 승진 횟수 확대, 필수보직기간 별도 적용, 명예퇴직 수시 실시 등의 제도 적용 기간을 연장(안 제71조, 부칙 제2조)

나.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의 명칭 변경(안 제71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의견조회 예정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첨단도로안전과**”를 “**도로시설안전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자동차관리관**”을 “**자동차정책과, 자율주행정책과, 자동차운영보험과**”로 한다.

1. 항공안전감독관 정비, 조종, 사실조사 분야 직위군(전문임기제 가급에 한함)
2. 철도안전감독관 차량, 신호·통신 분야 직위군(전문임기제 가급에 한함)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사운영에 관한 특례 적용례) 제71조에 따른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특례규정」 제16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
용된 5급 공무원의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전보에 대해서
는 필수보직기간을 2년으로 하
며, 이에 대한 적용기간은 인사
혁신처장과 협의한 바에 따른
다.

1. 건설안전과, 첨단도로안전과,
철도운영과, 철도시설안전과
간 전보
2. 국제협력통상담당관, 자동차
관리관 간 전보

④ (생략)

1. ----- 도로시설안전과-

2. ----- 자동차정
책과, 자율주행정책과, 자동차
운영보험과 -----

④ (현행과 같음)